

인천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2683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

변 론 종 결 2024. 5. 21.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2019. 3. 25. 3,900,000원, 2019. 3. 26. 35,000,000원, 2019. 3. 29. 22,000,000원, 2019. 4. 1. 2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피고의 언니로서 2019년이 되기 전 이미 합계 522,189,300원(2017. 5.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7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액 118,382,930원과 403,806,370원의 합계액)의 세액을 고지 받아 체납하고 있었다.

나. B는 2019. 3. 25. 본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70,242,750원을 입금 받았고, 같은 날 위 C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D은행 계좌로 3,900,000원을, 2019. 3. 26., 2019. 3. 29., 2019. 4. 1. 위 C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E은행 계좌로 각 35,000,000원, 22,000,000원,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에게 4차례 합계 80,900,000원(= 3,900,000원 + 35,000,000원 + 22,000,000원 + 2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위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책임재산의 부족을 심화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B가 피고의 계좌에 4차례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있기 전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변제기에 있었음은 분명하고, 위 금원지급행위 시점에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5,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5. 10. 9.부터 2019. 7. 23.까지 사이에 B의 계좌로 11차례 합계 76,400,000원(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피고의 B에 대한 송금 내역 기재와 같다)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위 76,400,000원은 B가 2019. 3. 25.부터 2019. 4. 1.까지 사이에 피고의 계좌로 4차례 입금한 금액의 합계인 80,900,000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고는 2017. 3. 15. 피고 소유 부동산인 인천 연수구 F건물 G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4,900,000원을 빌린 다음 2017. 3. 16. B에게 위 34,900,000원을 그대로 빌려주었고(피고가 그와 같이 B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2017. 3. 10.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B 및 H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위에 관한 피고의 설명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로 뒷받침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9. 3. 26. 피고의 계좌에 B가 보낸 35,000,000원이 입금되자 그 돈으로 E은행에 대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점, 피고는 2019. 3. 25. B로부터 입금 받은 3,900,000원에 관해 피고가 B의 아들을 일정 기간 뒷바라지한 데 대한

대가라고 설명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함께 위 금액의 크기 및 입금 시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설명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네 차례의 금원지급행위가 있기 얼마 전인 2019. 1. 16.부터 2019. 3. 19.까지 사이에 B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7,500,000원을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4. 1. B로부터 마지막으로 20,000,000원을 입금 받은 이후에도 2019. 6. 10.부터 2019. 7. 23.까지 사이에 B의 계좌로 4차례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4차례의 금원지급행위를 전후한 B와 피고 사이 자금의 흐름은 일방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자금 흐름에서 B가 의도적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변제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을 피고 명의 계좌에 유출시키려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엿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2019. 3. 25.부터 2019. 4.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4차례 합계 80,9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4차례의 금원지급행위는 B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 행위 또는 금전 대여 행위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B가 한 위 4차례의 금원지급행위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설령 위 4차례의 금원지급행위 중 2019. 3. 25.자 3,900,000원의 입금행위를 그 경제적 실질과 달리 표상에만 주목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이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여 당시 피고에게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

별지